

교육담당자·기관 관리자용 무료 자료

생성형 AI 업무활용 안전 가이드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기관이 먼저 정해야 할 기준을 법령과 정부 지침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CONTENTS

- 01 기관이 먼저 정할 5가지
- 02 입력 신호등: 넣어도 되는 정보
- 03 직무별 안전한 활용 예
- 04 결과물 검증 체크리스트
- 05 저작권과 AI 표기 원칙
- 06 딥페이크·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 07 내부 AI 사용 지침 견본
- 08 민감정보를 넣었을 때 대응 순서
- 09 직원 교육 로드맵
- 10 정부 지침 한눈에 보기·출처

기관이 먼저 정할 5가지

직원들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기관의 기준입니다.

51.8%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업무에 쓰는 비율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5-22)

63.5%

국내 근로자의 생성형 AI 사용률 (같은 자료, 2025-08-18)

71.9%

사무직의 생성형 AI 경험률 (과기정통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6-03-31)

쓰지 말라고만 하면 개인 휴대폰과 개인 계정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어디까지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직원도 안심하고 씁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	정할 것	기관 기준 예시	근거
1	입력 금지 정보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비공개 문서, 보안 자료는 외부 AI에 넣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름·연락처를 지우는 비식별 처리를 먼저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3·§24·§24의2 / 개인정보위 안내서 p.38(허용 이용방침 예시) / 국정원 AI보안 가이드북(2025-12)
2	승인 도구	기관이 검토한 업무용(기업용) 계정만 씁니다. 개인 무료 계정은 금지하거나, 쓰더라도 학습 거부 설정을 확인합니다. 보안 우려가 공개된 앱은 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위 안내서 p.23~24(개인용은 기본 학습, 기업용은 기본 비학습·계약 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28의8(국외이전)
3	결과 검증	사람이 확인하지 않은 결과물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실·수치·법령·출처를 확인하고, 최종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인사처 생성형 AI 활용 지침 /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10장 표)
4	저작권	특정 작품을 넣고 흉내 내게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하기 전 권리 관계와 서비스 약관(귀속·상업적 이용)을 확인합니다.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예방 안내서(2025-06) p.44~45
5	표기	외부에 내보내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에는 'AI 생성'을 표기합니다(기관 권장 기준). 기관이 대민 AI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 사전고지·결과물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권장 표기는 법적 의무 아님 / 대민 서비스: AI 기본법 §31·시행령 §23

책임자부터 정하십시오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08-06)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관리 체계를 권합니다. 지침 개정, 승인 도구 결정, 사고 보고 접수를 한 사람(또는 한 부서)이 맡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이라면 AI 교육은 법정 의무입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8(2026-08-28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AI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9장).

이 가이드 7장의 지침 견본에 빈칸을 채우면 기관 지침 초안이 됩니다. 이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기관 사정에 맞는 최종 판단은 소관 부처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십시오.

입력 신호등: 넣어도 되는 정보, 안 되는 정보

헛갈릴 때는 "이 내용이 내일 신문에 나와도 괜찮은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신호	정보 종류	예시	처리 원칙
빨강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금지. 업무용 계정이어도 넣지 않습니다.
빨강	민감정보	건강·병력·장애, 알레르기 같은 건강 특이사항,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성생활, 범죄경력 등	입력 금지
빨강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기록	실명이 담긴 민원·상담 기록, 학생·이용자 명단과 연락처, 사진	입력 금지. 비식별 후 노랑으로
빨강	인사·심사 자료	인사 평가, 징계, 채용 지원서·면접 평가표	입력 금지
빨강	비공개·보안 자료	대외비 문서, 결재 전 내부 문서, 계약 협상 자료, 계정·비밀번호, 내부망 주소, 소스코드	입력 금지
노랑	내부 메모·초안	회의 메모, 공개 전 보도자료·공고문 초안, 내부 매뉴얼 일부	이름·숫자를 지우고 필요한 문단만 승인 도구에 넣습니다.
노랑	집계 자료	부서별 교육 이수율, 민원 유형별 건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집계한 뒤
초록	이미 공개된 자료	법령·고시 원문, 공개된 보도자료·공고, 홈페이지 안내문	입력 가능. 결과는 검증
초록	일반 업무 요청	개인정보 없는 직접 쓴 문장 다듬기, 아이디어 목록, 교육 퀴즈 초안	입력 가능

노랑을 초록으로 바꾸는 법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넣습니다
민원인 실명·연락처·사연 원문을 붙여넣고 "답변 써 줘"	"민원인 A가 처리 지연에 대해 항의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처리 일정을 안내하는 답변 틀을 써 줘"
학생 이름과 알레르기 정보를 넣고 가정통신문 요약	개인정보를 뺀 일반 안내문만 다듬고, 개별 내용은 사람이 직접 채웁니다
결재 전 내부 보고서 전문을 올리고 "요약해 줘"	내가 정리한 공개 가능한 요점 세 줄을 넣고 문장만 다듬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내는 OX 문제

"생성형 AI에 아동 이름과 알레르기 같은 생활 특이사항을 넣고 문장 생성·요약을 요청해도, 내부 교육 목적이면 허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인류의지혜 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교육(2025-10) 교안에 실린 문항입니다. 목적이 내부용이어도 입력하는 순간 외부 서버로 전송됩니다.

업무용(기업용) 서비스가 입력 내용을 학습에 쓰지 않더라도, 외부 사업자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위탁)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국외이전 요건(개인정보보호법 §28의8)도 따져야 합니다(개인정보위 안내서 p.23~24). 그래서 빨강은 계정 종류와 관계없이 넣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권합니다.

직무별 안전한 활용 예

초안은 AI에게, 판단과 마지막 확인은 사람에게. 직무마다 경계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 문서 초안

이렇게 씁니다

- 공개된 근거와 내 메모로 공문·보고서 개요 잡기
- 어려운 문장을 쉬운 말로 고치기

하지 말 것

- 결재 전 비공개 문서를 통째로 붙여넣기
- AI가 적어 준 법령 조문·고시 번호를 원문 대조 없이 인용하기

HR: 채용 공고문·사내 안내문

이렇게 씁니다

- 직무 설명 문장 다듬기
- 공고문에 성별·나이 차별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 점검 요청

하지 말 것

- 지원자 이력서·면접 평가표 입력
- AI 판단만으로 서류 합격·불합격 정하기

홍보 문구·카드뉴스

이렇게 씁니다

- 문구 시안 여러 개 받아 사람이 고르기
- 맞춤법·띄어쓰기 점검

하지 말 것

-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 합성
- 특정 작품·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요청
- AI 생성 이미지를 표기 없이 외부 게시

민원 응대 초안

이렇게 씁니다

- 민원 유형별 답변 틀 만들기
- 딱딱한 회신을 정중하고 쉬운 말로 바꾸기

하지 말 것

- 민원인 실명·연락처·주소·사연 원문 입력
- 담당자 확인 없이 AI 답변을 그대로 회신

회의록·보고 요약

이렇게 씁니다

- 이름을 지운 메모로 요점 정리
- 결정 사항·할 일 목록 뽑기

하지 말 것

- 참석자 동의와 보안 검토 없이 회의 녹음 파일을 외부 서비스에 올리기

교육자료·내부 안내

이렇게 씁니다

- 퀴즈 문항, 사례 토론 질문 초안
- 공개된 법령을 쉬운 설명으로 바꾸기

하지 말 것

- 남의 강의자료·책 내용을 넣고 재가공하기
- 법정 수치를 검증 없이 교안에 실기

채용·평가에 AI를 쓰는 경우는 따로 검토하십시오

AI 기본법은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합니다(§2 제4호 사목).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같은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유아·초·중등 학생 평가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위험관리·설명·사람의 관리감독 같은 책무(§33~§35)는 이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외부 AI 면접 시스템을 채용에 쓰기만 하는 기관은 '이용자'로 봅니다. 그래도 도입 전 공급사의 책무 이행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며 판단 근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결과물 검증 체크리스트

생성형 AI는 그럴듯하게 틀립니다. 내보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항목	확인 질문	확인 방법
사실	실제로 있는 기관·사업·사건인가? 날짜와 이름이 맞는가?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원문 대조
수치	금액·비율·인원·기한이 원자료와 같은가? 단위가 맞는가?	원자료 표에서 직접 확인. 계산은 다시 해 봅니다
법령	조문 번호·과태료·시행일이 현행인가? 시행 예정 조항을 현행처럼 쓰지 않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시행예정 탭 확인
출처	인용한 자료·판례·논문이 실제로 있는가? 링크가 열리는가?	링크를 직접 열어 문장을 찾습니다. 못 찾으면 삭제
편향·차별	성별·나이·장애·지역·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섞이지 않았나? 한쪽 입장만 담지 않았나?	다른 부서 동료 한 명에게 읽혀 봅니다
개인정보·보안	결과물에 실명·연락처·내부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가?	찾기 기능으로 이름·숫자 점검
저작권	기존 글·이미지·캐릭터와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은가?	이미지 검색, 문장 일부 검색
표기	외부로 나가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표기를 했는가?	기관 표기 기준(5장) 확인

보내기 전 30초 점검

- ☐ 내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다. (설명 못 하는 문장은 지웁니다)
- ☐ 숫자와 법령은 원문을 한 번 이상 직접 봤다.
- ☐ AI가 만든 출처·링크는 모두 열어 봤다.
- ☐ 받는 사람이 알면 곤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
- ☐ 필요한 곳에 'AI 생성' 또는 'AI 도움을 받아 작성' 표기를 했다(기관 기준에 따름).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부 지침도 같은 방향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훈련생용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2026-05-22)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쓰되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고 정했고, 최근 3년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해 환각·문헌정보 불일치 등 11건에 훈련비 환수 등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2026-10-01)도 AI의 판단을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저작권과 AI 표기 원칙

저작권 책임은 쓰는 사람에게, AI 기본법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2025-06) 기준

질문	안내서 내용
AI 결과물도 저작물인가?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자기 저작물 입력, 수정·추가·삭제, 선택·배열·구성)만 등록할 수 있고, 프롬프트 입력이나 오타자·색상 수정만으로는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자로 AI를 적을 수 없습니다.
남의 작품과 비슷하게 나오면?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특정 저작물을 입력하거나 그와 비슷한 결과를 유도하는 프롬프트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 공개하기 전에는?	권리 관계와 약관(결과물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을 확인합니다. 인격권·초상권·영업비밀 침해에도 주의합니다.
등록을 거짓으로 하면?	저작권법 §136③제2호(2026-08-11 전에는 §136②)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업 과정(무엇을 고치고 더했는지)을 기록해 두십시오.

AI 기본법 투명성 의무(§31): 누구의 의무인가

조항	내용 (의무 주체: 인공지능사업자)	과태료
§31①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1,500만원 (상한 3천만원, §43·시행령 별표2)
§31②	생성형 AI 결과물에 생성 사실 표시 (사람이 알아보는 방식 또는 기계 판독 방식)	직접 과태료 없음. 사실조사 → 시정명령 (§40)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31③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고지·표시	

직원이 업무 도구로 쓸 때

공문·보고서 초안이나 홍보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직원과 기관은 결과물을 활용하는 '이용자'라 §31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과기정통부 투명성 가이드라인, 2026-01-21). 시행령 §23③제2호도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기관이 대민 AI 서비스를 열 때

홈페이지 AI 상담 챗봇처럼 국민·고객이 직접 쓰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기관등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2 제7호 나목)로서 사전고지·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운영 전 AI 기본법 지원데스크(080-850-2546)에 확인하십시오. 계도기간(최소 1년) 중 과태료는 유예되며 종료일은 미발표입니다.

기관 자체 표기 기준 예시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

결과물	권장 표기
외부 게시 이미지·영상(홍보물, SNS)	이미지 하단이나 캡션에 'AI 생성 이미지'.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합성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 (6장)
보고서·연구·제출 문서	제출처 규정에 따름. 활용 범위(초안·번역·요약)를 각주로 밝히기 권장 (교육부는 학생 수행평가에서 기록 없이 낸 AI 생성물을 채점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함, 2025-12-23)

딥페이크·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장난으로 만든 성적 합성물도 범죄입니다.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2024-10-16 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넣었습니다.

행위	처벌	근거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전 5년 이하)	§14의2
그 편집물을 반포 (사후에 본인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포함)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4의2
영리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4의2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14의2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 강요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14의3

2026-10-0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수사 절차와 기관 명칭을 바꾼 것이며, 위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지킬 것

- 동료·학생·이용자의 사진을 합성 도구에 넣지 않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장난 합성도 초상권·명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물은 열어 보거나 저장하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 시청·저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 업무로 실존 인물 영상·음성을 다룰 때는 본인 동의를 받고, 외부에 내보낼 때는 AI 생성 사실을 분명히 표시합니다(AI 기본법 §31㉓ 취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묻고, 2차 피해(소문, 유포 경로 추적을 이유로 한 재열람)를 막습니다.
- 게시 위치(주소)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돌려 보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112) 신고와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대표번호 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d4u.stop.or.kr, 삭제 지원)을 안내합니다.
- 가해자가 직원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전할 한 문장

"만들지 않고, 열지 않고, 보내지 않는다." 4대폭력 예방교육이나 디지털 윤리 교육에 이 내용을 함께 넣으면 생성형 AI 교육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관 내부 AI 사용 지침 견본

빈칸을 채우고 기관 규정 형식에 맞게 다듬어 쓰십시오. 공공기관은 상위 지침(국정원·행안부·인사처)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생성형 AI 업무 활용 지침(안)

제정 _____ · 담당 부서 _____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입력 정보, 사용 도구, 결과물 검증과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규직, 기간제, 파견·위탁 인력 등 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무:

제3조(사용 도구) ① 업무에는 기관이 승인한 도구만 쓴다. 승인 도구 목록: _____ ② 개인 계정 사용은 [금지 / 학습 거부 설정 후 허용]한다. ③ 새 도구는 _____의 검토(약관·데이터 보관·국외이전)를 거쳐 추가한다.

제4조(입력 금지 정보) 다음은 어떤 도구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1. 고유식별정보 2. 민감정보 3.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민원·상담·인사 기록 4. 비공개·대외비 문서 5. 계정·비밀번호·시스템 정보 6. 그 밖에 _____

제5조(결과물 검증과 책임) ① 작성자는 사실·수치·법령·출처를 확인한 뒤 결과물을 사용하며, 최종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다. ②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_____의 검토를 거친다. ③ 채용·평가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판단에 AI를 쓰려면 _____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6조(표기) 외부에 게시하는 AI 생성 이미지·영상에는 'AI 생성'을 표기한다. 보고서·제출 문서의 표기는 _____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초상권) 타인의 저작물을 입력해 유사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며, 실존 인물의 얼굴·음성을 본인 동의 없이 합성하지 않는다.

제8조(사고 보고) 제4조의 정보를 입력했거나 입력이 의심되면 _____시간 이내에 _____(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보안 담당)에게 보고한다. 보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9조(교육) 전 직원은 연 _____회 이상 생성형 AI 안전 활용 교육을 받으며, 신규 직원은 입사 후 _____개월 이내에 받는다.

제10조(관리 책임자와 점검) AI 활용 관리 책임자는 _____로 하며, 이 지침은 매년 _____월에 점검해 고친다.

부칙 이 지침은 _____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위 안내서(p.38)는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기업·기관이 사용 목적과 금지 행위를 허용 이용방침(AUP)으로 작성·공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입력 금지를 담은 이용정책을 사례로 듭니다. 위 견본은 이를 기관 내부 지침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제8조 보고 기한은 유출등 통지·신고 기한(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8장)을 지킬 수 있도록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처럼 짧게 정하십시오.

민감정보를 넣었을 때: 사고 대응 순서

숨기면 사고가 커집니다. 빨리 말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 1 멈춥니다.** 같은 대화창에 더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서비스, 계정 종류(개인·업무용), 입력 시각, 입력한 정보의 종류와 대략의 인원 수를 메모합니다. 입력 내용을 다시 복사해 돌리지 않습니다.
- 2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웁니다.** 해당 대화를 삭제하고, 공유 링크를 만들었다면 지웁니다. 학습 활용 설정이 켜져 있었다면 끕니다. 삭제 후 서버 보관 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정책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 3 바로 보고합니다.** 부서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보안 자료라면 보안 담당)에게 알립니다. 지침에 정한 보고 기한(건본 제8조)을 지킵니다.
- 4 책임자가 '유출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기관의 통제를 벗어났는지, 업무용 계약(데이터 비학습·삭제 조건)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해석** 판단이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을 활용합니다.
- 5 법정 기한 안에 통지·신고합니다.**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면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신고 대상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6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고칩니다.** 원인(지침이 없었는지, 도구 설정 문제인지, 교육 부족인지)을 기록하고 지침·승인 도구·교육 내용을 보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신고 기준 (2026-09-11 시행 현행)

구분	기준	근거
정보주체 통지	유출등을 알게 된 때 72시간 이내 서면등으로 통지. 확산 방지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조치 후 즉시. 구체 내용을 모르면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통지. 연락처를 모르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개인정보보호법 §34①, 시행령 §39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나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가능성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	법 §34②, 시행령 §39의2·§39의3
기관 신고	① 1천 명 이상 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③ 외부 불법 접근 중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다만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 등으로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정보주체 통지는 별도)	법 §34③, 시행령 §40

생성형 AI에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넣은 경우가 곧바로 '유출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보관·학습 조건과 삭제 여부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판단하고, 그 판단 과정을 기록해 두십시오(해석). 공공기관은 기관 보안 규정과 상급기관 보고 체계를 함께 따릅니다.

직원 교육 로드맵

지침은 교육으로 익힐 때 현장에서 지켜집니다. 전 직원, 직무별, 관리자의 세 단계로 나누어 익히게 하십시오.

단계	대상	목표와 내용 예	형태 예
1. AI 리터러시 전 직원	모든 직원, 신규 입사자	생성형 AI가 잘하는 것과 틀리는 방식(그럴듯한 오류), 입력 신호등, 결과물 검증, 저작권·딥페이크 기본, 기관 지침 설명	집합 강의 + OX 퀴즈
2. 직무별 실습 부서별	행정, 인사, 홍보, 민원, 교육 담당	부서 실제 업무로 실습: 공문 초안, 공고문 점검, 홍보 문구, 민원 답변 등. 비식별 처리 연습과 검증 체크리스트 적용까지 한 번에	소그룹 실습, 실습용 예제는 사전 협의로 준비
3. 관리자 과정 관리자	부서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안 담당	지침 수립·개정, 승인 도구 검토 기준, 사고 보고 처리, 채용·평가 등 고영향 업무 판단, 대민 AI 서비스 도입 시 AI 기본법 검토	워크숍, 지침 초안 함께 작성

교육 계획 전 확인할 것

- ☐ 우리 기관에 생성형 AI 사용 지침이 있다(없으면 7장 견본부터).
- ☐ 승인 도구와 계정 정책(개인 계정 허용 여부)이 정해져 있다.
- ☐ 사고 보고를 받을 사람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
- ☐ 부서별로 AI를 가장 많이 쓰는 업무 세 가지를 알고 있다(실습 예제로 씁니다).
- ☐ 개인정보보호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일정과 묶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공공기관은 AI 교육이 의무입니다 (2026-08-28 시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8: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임직원에게 **AI 이해 증진과 전문 지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시설과 장비·운영 실적(또는 수행 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수탁기관과 위탁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시행령 §25,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법·시행령에 교육 횟수·시간 규정은 없어 기관이 정해 실시하며, 미 실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 흐름

과기정통부 전 국민 AI 활용역량 강화(2026-03-11), 교육부 재직자 AI·디지털 교육 확대(2026-02-20), 고용노동부 'AI+역량 Up 프로젝트'(2025-12-18)가 발표했습니다. 인사처의 공무원 AI 교육 시간 기준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사업주훈련 지원 확인 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5는 법령상 의무교육을 지원에서 뺍니다. 'AI 업무활용' 과정은 제외 목록에 없어 인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

정부 지침 한눈에 보기

기관 지침을 만들 때 함께 볼 법령·지침입니다. # 번호는 아래 출처 번호입니다.

기관	문서명	날짜	핵심	#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2026-01-22 시행	§31 사전고지·표시, 시행령 §23㉔ 예외(내부 업무 용도 등), §43 과태료	1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026-01-21	의무 주체는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업무 도구 이용자는 제외, 계도기간 최소 1년	2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5-08-06	생애주기 4단계, 개인용·기업용 차이, 기업용 계약 권고, 국외이전 검토, 입력 금지 예시	3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6-05-19	학습 활용 거부, 대화 기록 삭제, 업무 자료 입력 주의	4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2.0)	2025-12-10	2023-06 지침 개정판, 보안위협 15개·대책 30개	5
국가정보원	특정 해외 생성형 AI 앱 보안 우려 보도자료	2025-02-10	입력 패턴 수집, 학습 제외 기능 없음, 해외 서버 저장 등 지적	6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2026-06-10	기획~운영 5단계, 검색증강(RAG) 우선 전략	7
행정안전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8	2026-08-28 시행	공공기관 직원 AI 교육 의무, 위탁 가능	11
인사혁신처	인공지능(AI) 활용가이드 / 교육훈련생 생성형 AI 활용 지침	2025-03 / 2026-05-22	업무 활용 사례 / 훈련보고서: AI는 보조 도구, 최종 책임은 본인	8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2026-10-01	6대 가치·68개 점검 항목, AI 판단에 사람의 검토·개입	7
교육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	2025-12-23	AI 활용 과정 표기, 기록 없으면 채점 제외 가능	9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 / 분쟁 예방 안내서	2025-06	사람의 창작적 기여만 등록, 침해 책임은 이용자, 공개 전 약관 확인	1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유출등 통지·신고)	2026-09-11 시행	72시간 통지·신고,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	11
법무부 소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14의3	2024-10-16	허위영상물 제작·배포·소지·시청 처벌	11

출처 (모두 2026-10-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시행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 · 시행령 같은 주소 + 시행령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0669> · 계도기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80>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Id=1143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용자 가이드):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Id=12084>
- 국가정보원: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86 · 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num=144
- 국가정보원: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334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126757 · 윤리기준 ntId=129926
- 인사혁신처: <https://www.data.go.kr/data/15142458/fileData.do> · 지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3190>
- 교육부: <https://www.moe.go.kr> (보도자료 2025-12-23, boardSeq=104984)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 같은 주소 brdctsno=54252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 통계·정책: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Id=10093071&menuNo=200433> · 과기정통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949>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406>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52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제2019-49호 · 대표강사 이현실

AI 규칙은 문서로, 습관은 교육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면 이제 직원들 손에 익힐 차례입니다.

현업에 맞춘 교육,

수강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한 번 강의한 기관에서 다시 찾는 교육.

AI 교육은 이강준 수석강사가 맡고, 이현실 원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STEP 1

홈페이지 문의하거나 전화로 기관
유형·인원·희망 시기와 'AI 교육'을
남겨 주세요.

STEP 2

지침 유무와 부서별 사용 현황에
맞춰 과정 구성과 일정을
제안드립니다.

STEP 3

사전 협의로 기관 업무에 맞는 실습
예제를 준비합니다.

전화	010-5746-4561
이메일	wisdomlab2014@gmail.com
홈페이지	wisdom-lab.com (문의하기 · 자료받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 '인류의지혜'
주소	서울 양천구 은행정로17길 32 · 전국 출강

인류의지혜 채널

AI 업무 자료실	wisdom-lab.com/ai-library	분야별 AI 업무 자료 100가지 무료
블로그	wisdom-lab.com/blog	교육 담당자 실무 글
유튜브	YouTube '인류의지혜'	강의 현장 영상
인스타그램	@wisdomlab_official	강의 소식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present9089	교육 후기·현장 이야기



휴대폰으로 찍으면
강의 문의로 바로 갑니다

인류의지혜

이 자료는 2026-10-16 법령 기준입니다. 시행 전·후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